

뉴스레터

축복의향기요양원 2025년 3월

공지사항

1. 축복의향기요양원은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
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
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자분들께 노인인권보호 및
직원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하여 상호존중하는 환경을
만들어가고 있습니다.

첨부 – 노인학대예방 포스터
-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

2. 보건복지부에서는 [연명의료법]에 따라 국민의
'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
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
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"연명의료결정제도"를
운영하고 있습니다.
수급자/보호자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,
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여주시기
부탁드립니다.

첨부 – 연명의료결정제도 브로셔

인식개선사업



뉴스레터

축복의향기요양원 2025년 3월

첨부 (노인학대예방 포스터)

노인학대 신고,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

☑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

- | | |
|--|---|
| <p>신체적 학대</p> <p>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</p> | <p>정서적 학대</p> <p>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</p> |
| <p>성적 학대</p> <p>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</p> | <p>경제적 학대</p> <p>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</p> |
| <p>방임</p> <p>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</p> | <p>유기</p> <p>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</p> |

☑ 노인학대 의심되거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나요?

노인학대 발견 즉시 **경찰서 112**, 혹은
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로 신고합니다.

※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.
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됩니다.

사회복지법인 오병이어복지재단
서울특별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

첨부 (연명의료결정제도 브로셔)

“인생의 마지막 순간,
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”

연명의료결정제도

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
사전연명의료의향서
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
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.

연명의료결정제도란?
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(연명의료)을 유보(시행하지 않는 것)하거나, 중단(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)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(2018. 2. 4. '연명의료결정법' 시행)
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?

